

제 780 호

1980. 5.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 집 :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17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3
제 17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3
제 174 호 :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4
제 175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4
제 176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삽화분구) 정비사업시행변경허가 ...	5
제 177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 변경결정	6

◎ 공 고

제 166 호 :	환지계획변정인가및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7
제 167 호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발표	7
제 169 호 :	도림구역 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0
제 140 호 (중구청공고) :	공인개각 (신조공고)	11

◎ 정 정

의지	상임위원	부위원	장	의지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72 호

도시 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5.22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40	35 m	3,820m	적선동	세브란스 병원	
변경	대로	1	40	"	"	"	"	행촌동 206-29 도로용지확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3 호

도시 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고시 제 225 호 (78.5.25) 로
도시 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청량리
341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계획
가. 도로조서

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시설	소로	1 류	10 m	400m ~ 330m	청량리 341	청량리동 214

1980.5.2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74 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 제 429 호 (78.8.26) 로 결정 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 시설 (녹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5.23

서울특별시장

○ 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경의제 2 녹지	충정로 3 가	5,000 m ²	

※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75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 호 (80.2.13)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 153 호 (80.5.2) 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한 강남구 내치동 623,624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5.2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내치동 623,624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대 지	1324.5 평	1324.5 평
구 모	지상 3 층 지하 1 층	지상 3 층 지하 1 층
연면적	2,685.52 평	2,952.15 평

-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강남구 내치동 624 의림상가 (주)
대표이사 신 병 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1980. 5.

나) 준공예정일: 198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다음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
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

토 지 세 목 조 서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이 해 판 제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대치동	623	전	642.7평	도봉구쌍문동 421번지8-통1반	선병심	강남구반포동 274-58경남 APT 7-405	황의영
"	624	전	681.8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6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삼화분구)

정비사업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94 호 (78. 11.11) 로 시행허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삼화분구)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 33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변경승인 (80. 3.27) 이 당시 공고 제 119 호 (80.4.15) 로 변경 결정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삼화분구)건축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 12.1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 1 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5.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1-1 외 7 필지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반도특
정가구정비지구(삼화분구)정비사업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21번지성명: 한국건물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상옥)

라. 사업기간

착공예정년월일: 1978.11.11

준공예정년월일: 1981. 9.30

마.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시행면적: 380 평

건축규모: 대지면적:

1,256.02㎡ (380 평)

건축면적: 629.08㎡

연면적: 당초: 9,613.18㎡

변경: 10,757.74㎡

층 수: 당초: 지하 4층, 지상

10층, 옥탑

변경: 지하 4층, 지상

12층, 옥탑

용 도 : 업무시설, 근로
생활시설

◎서울특별시고시제 177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

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10)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5.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장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소매시장	방신시장	강서구 방화동 567 - 4 일대	1,018.5평	
"	"	갈현중앙 시장	은평구 갈현동 424 일대	459.9 평	
기정	"	상계중앙 시장	도봉구 상계동 389 - 234 일대	997 평	
변경	"	"	"	1,408.4 평	확장411.4평
변경	폐지	삼성시장	은평구 역촌동 16 일대	497 평	폐지(구주 소: 서대문구 대조동 49- 1와 6 필)

* 별첨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66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
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9 호 (80. 4.8)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 제 2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변경 지정 공고 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조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 한다.

1980. 5.

서울특별시장

- 환지에정지 변경내역 -

- 가. 사업명 :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3,617.1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산

2 - 19 의 45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167 호

관광종사원자격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980 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시행
관광 종사원 (지배인을 제외한 관광
숙박업 종사원 및 국내관광 안내원)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80 년 5 월 24 일

서울특별시장

- 합격자는 1980 년 6 월 2 일부터 6 월 7 일까지 관광과에서 합격통지서를 교부받을것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 자격증 획득을 위한 기초교육은 국제관광공사 훈련원 (전화 57-5043) 로 문의할 것.
- 기초교육 수료후 자격증 신청은 주소자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신청할 것.
(단 주소가 지방인 경우 종로구청 시민봉사실)

1. 회평 숙박종사원 (전과목응시자) 최종합격자

1001	1076	1171	1264	1380	1466	1568	1675
1003	1082	1178	1265	1381	1469	1570	1676
1007	1091	1184	1266	1384	1470	1581	1682
1009	1092	1185	1270	1385	1474	1584	1684
1010	1097	1187	1271	1393	1477	1586	1686
1020	1098	1188	1274	1398	1479	1591	1687
1021	1102	1190	1275	1402	1483	1592	1693
1023	1104	1191	1279	1406	1485	1598	1696
1026	1106	1196	1282	1413	1492	1605	1700
1032	1107	1199	1283	1415	1493	1606	1705
1034	1108	1200	1285	1416	1495	1615	1706
1036	1115	1202	1287	1417	1498	1616	1708
1040	1117	1204	1291	1418	1506	1618	1709
1041	1119	1205	1294	1419	1508	1620	1711
1042	1123	1209	1297	1421	1509	1621	1716
1044	1124	1211	1302	1422	1512	1622	1726
1045	1129	1215	1303	1427	1513	1624	1727
1046	1139	1217	1307	1430	1514	1635	1731
1047	1142	1218	1315	1431	1516	1636	1733
1048	1143	1220	1316	1432	1521	1638	1737
1055	1145	1223	1322	1434	1524	1651	1741
1057	1146	1224	1326	1443	1526	1653	1742
1061	1150	1236	1327	1444	1528	1656	1743
1063	1153	1240	1328	1446	1536	1659	1745
1066	1159	1247	1330	1448	1540	1661	1746
1067	1163	1249	1334	1453	1544	1662	1754
1068	1164	1252	1350	1458	1545	1663	1756
1071	1166	1253	1352	1461	1546	1667	1760
1072	1167	1254	1358	1463	1550	1671	1770
1075	1169	1260	1363	1464	1559	1673	1772

780 호

시

보

1980.5.26 16-9

1773	1801	1846	1874	1920	1973	3315	3354
1776	1803	1849	1881	1922	1975	3316	3357
1778	1809	1851	1884	1936	1976	3317	
1782	1815	1862	1890	1937	1979	3322	계 305 명
1788	1817	1864	1897	1939	1985	3324	
1790	1827	1865	1904	1944	1987	3338	
1794	1833	1867	1908	1959	1990	3348	
1796	1843	1870	1911	1960	3301	3352	
1800	1845	1871	1917	1964	3305	3353	

2. 면 집 전 형 합 격 자

2001	2003	2005	2007	2009			
2002	2004	2006	2008				

2. 서 류 전 형 합 격 자

3001	3007	3013	3019	3025	3031	3038	3044
3002	3008	3014	3020	3026	3032	3039	
3003	3009	3015	3021	3027	3033	3040	계 43 명
3004	3010	3016	3022	3028	3034	3041	
3005	3011	3017	3023	3029	3036	3042	
3006	3012	3018	3024	3030	3037	3043	

4. 국내 관광 안내원 최종 합격자

4001	4019	4047	4071	4102	4130	4144	4160
4002	4026	4048	4074	4103	4131	4145	4161
4005	4029	4051	4075	4104	4133	4146	4163
4007	4032	4052	4083	4105	4134	4147	4164
4009	4034	4053	4084	4110	4135	4149	4167
4010	4037	4054	4091	4112	4138	4150	4170
4014	4038	4056	4097	4114	4139	4151	4171
4015	4043	4058	4098	4119	4140	4154	4172
4016	4044	4064	4099	4121	4141	4155	4173
4017	4045	4069	4100	4122	4142	4157	4175
4018	4046	4070	4101	4129	4143	4158	4176

16-10 780 호

시

보

1980.5.26

4179	4184	4189	4193	4198	4204	4215	4236
4180	4186	4190	4194	4200	4205	4216	4237
4182	4187	4191	4195	4202	4206	4220	계 118 명
4183	4188	4192	4196	4203	4207	4227	

◎ 서울특별시 공고제 169 호

도엽구역 제 3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367 호 (73.9.6)
로 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340
호 (79.9.20)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도엽구역 제 3 지구 토지소
유자로 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를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에 공한다.

1980. 5. 2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칭 : 도엽구역 제 3 지구 재
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종로구 신문로 1 가

58-7 번지의 23 필지

다. 시행면적 : 2,446.4 m^2

라. 대지면적 : 1,788.2 m^2

마. 공공용지부담면적 : 658.2 m^2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
허가서로 확정함)

○ 건축면적 : 784.9 m^2

(건폐율 : 43.89 %)

○ 연 면 적 : 12,678.45 m^2

(용적율 : 517.02 %)

○ 주 용 도 :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 총 수 : 지상 10 , 지하 3 , 옥탑 2

사. 시행자 : 도엽구역 제 3 지구 재개
발조합

아. 시행기간 : 시행인가 일로부터

82년 7월 2일

자. 공람기간 : 80.5.27. - 80.6.27.

차.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 과
(0-2704)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 가
58-28

(73-3569 , 33-7136)

◎ 중구청 공고제 140 호

공인개작 (신조)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관하 을지로 3, 4, 5 가동의 공인을 개작 (신조) 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10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0.5.

중 구 청 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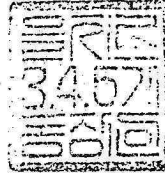
1. 개작공인 사용일시 : 1980.6.2

2. 개작 (신조) 공인인명 :

공 인 의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을지로 3, 4, 5 가동장직인및제인

정

정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보 제 774 호 (80.4.30) 에 개
제된 내용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1980. 5. .

서 울 특 별 시 장

해 당 부 분	페이지	오 류	정 정
규칙제 1856 호 서울특별시재무 회계규칙중개정 규칙제 5 조제 1 항제 4 호	61-10	의무적 경비	의무적경비와 전도자금
동규칙중개정규칙 제 5 조제 2 항제 4 호	61-11	의무적 경비	의무적경비와 전도자금

해 당 부 분	페이지	오	류	정	정
동규칙중개정규 칙제 13 조		누	락	제 13 조 (추가개정예산) 제 1 항 중의 " 제 10 호 서식 "	을 별지의 " 제 10 호 서식 " 으로 한다.
동규칙중개정규 칙제 14 조	61-11	제 14 조 (예산의 이월)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3 항 중 " 각과장 " 을 " 각과장 및 청소의장 " 으로 제 2 항 중 " 20 일 " 을 " 10 일 " 로 하고 제 4 항 중 " 주관과장 " 을 " 관계과장 및 청소의 장 " 으로 한다.	제 14 조 (예산의 이월)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 각과장 " 을 " 각과장 및 청소의장 " 으로 제 2 항 중 " 20 일 " 을 " 10 일 " 로 제 1 항 및 제 2 항 중의 " 제 11 호 서식 " 을 " 제 11 호의 1 서식 , 제 11 호의 2 서식 " 으로 하고 제 4 항 중 " 주관과장 " 을 " 관계 과장 및 청소의장 " 으로 한 다.		
동규칙중개정규 칙의 별지 서식	61-25 61-25 61-26 61-29	제 1 호 서식 제 3 호 서식 제 7 호 서식 제 17 호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별지 제 3 호 서식 별지 제 7 호 서식 별지 제 17 호 서식	

< 제 1 호 서식 >

세 (입) 출 예 산 요 구 서

(참)		(편)	(항)	국				과
		결 산 액	(정년도)최 종예 산		요 구 예 산			증 감
(세)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증 감	요구액	산출내역	

주: 세입세출 및 관별로 작성

< 제 11 호의 1 서식 >

명 시 (사 고) 이 월 비 요 구 서

국 과

과 목				예산액	지 출 액		익년도 이월액	재 원 내 역			비고
관	항	(세항)	목		기지출액	금후지출 예상액		○ ○ 보조금	○ ○ 보조금	자체비	

소방특별사건목회계규칙 391

주 : 1. 기지출액은 내무국장이 지정하는 월일 현재로 한다.

2. 비고란에 이월사유를 명시한다.

< 제 11 호의 2 서식 (부표) >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과 목				사업명	공기	예산액	사업비 (공사비)		자재비		지장물 이전비		계		2.28 현재 공정	완공 예정일	자연 사유
관	항	세항	목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주 : 1. 보상비는 지장물 이전비에 포함함.

2. 공사이외의 사업으로 해당하지 않는 "란"은 기장하지 않음.

3. 세항별로 작성

4. 계약서 사본 첨부

